

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민방위 경보전과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의무설치, 경보단말장비 표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「민방위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7639호, 2020.12.22. 공포, 2021.6.23. 시행)됨에 따라, 인증기관의 지정기준, 절차 및 인증기관의 업무범위, 사후관리, 지정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고시로 위임(안 제65조의 3제1항)

- 1)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각 호로 정하고,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위임

나.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규정(안 제65조의3제2항)

- 1)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를 인증신청 접수, 인증시험 및 결과 통보, 인증수수료 수납, 인증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, 인증결과 보고로 정함

다.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(안 제6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)

- 1)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,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
- 2)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

라. 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공표(안 제65조의3제6항 및 별표 10)

- 1) 법 제33조의2제4항에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증기관을 지정 취소할 경우에 필요한 처분 세부기준을 별표로 신설
- 2) 인증기관을 지정 취소한 경우 취소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

마.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을 고시로 위임(안 제65조의3제7항)

- 1)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수수료는 인건비, 경비, 기술료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여 인증기관이 산정기준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정하도록 함

바.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서식 규정 및 그 밖에 세부사항 고시 위임(안 제65조의3제8항 및 별지 제45호서식, 별지 제46호서식)

- 1) 인증신청서(별지 제45호서식), 인증서(별지 제46호서식) 공표
- 2) 인증기관의 지정, 관리, 취소 등에 관한 그 밖에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고시로 위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5조의3(민방위 정보단말장비의 인증 등) ①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1. 인증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할 것
2.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을 갖출 것

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인증신청 접수
2. 인증시험 및 결과 통보
3. 인증수수료 수납
4. 인증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
5. 인증결과 보고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요건, 인증기관 심사방법, 필요 제출자료 등을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알리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.

④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인증기관

지정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, 이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.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된 인증기관이 법 제33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인증기관 지정 요건 유지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
2. 인증업무 수행 결과보고
3.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하여준 제품에 대한 사후 조사 협조

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의 처분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 취소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.

⑦ 법 제33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에 소요되는 인건비, 경비, 기술료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, 인증기관은 산정기준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.

⑧ 영 제55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르고, 영 제55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46호 서식에 따른다.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인증기관의 지정, 관리, 취소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44호서식,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0]

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 세부기준(제65조의3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(2. 개별기준 다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)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- 다. 위반행위의 동기, 위반 정도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법령	처분기준		
		1차	2차	3차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33조의2 제4항 제1호	지정취소		
나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인증하여 준 경우	법 제33조의2 제4항 제2호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	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3조의2 제4항 제3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라. 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	법 제33조의2 제4항 제4호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	

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	전자우편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
인증업무의 범위	(필요시 별지 사용)	

「민방위기본법」 제33조의2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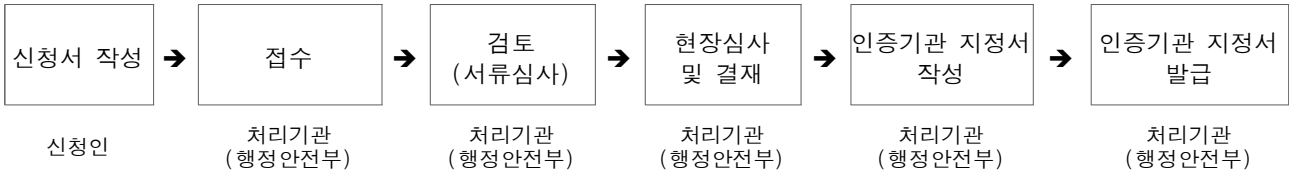
붙임 서류	1. 「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5조의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. 인증업무 수행 계획서 3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

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
제 조 자	회사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자우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판매자 (판매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)	회사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자우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대리인	성명	전자우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인증신청 장비	제품명	제품사양	

「민방위기본법」 제3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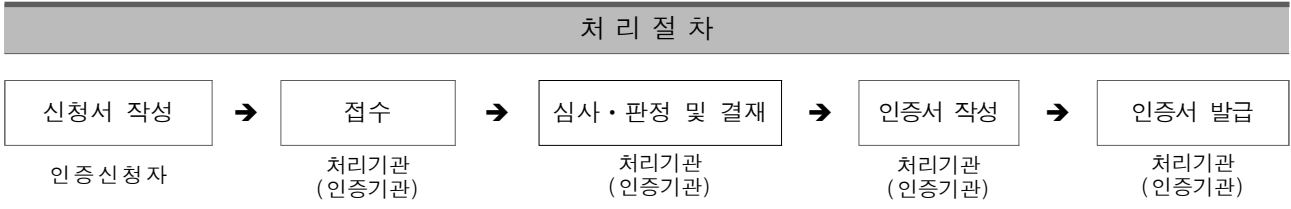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(회사명 및 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인증기관의 장 귀하

붙임 서류	1.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(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합니다) 2.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경보단말장비 설명서 4. 설계서, 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5. 기타 인증기관이 요청하는 자료	수수료 「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5조의3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수료
-------	---	--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제 호

민 방 위 경 보 단 말 장 비 인 증 서

인증사업자 상호(회사명):

대표자:

주 소:

「민방위기본법」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방위경보단말장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.

1. 제조/공급회사명
2. 인증번호:
3. 인증시험일:
4. 비고:

년 월 일

인증기관의 장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5조의3(민방위 정보단말장비</u> <u>의 인증 등) ① 법 제33조의2제</u> <u>8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</u> <u>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이에</u> <u>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</u> <u>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 <u>1. 인증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</u> <u>기술력을 보유할 것</u> <u>2.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</u> <u>험을 갖출 것</u> <u>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</u> <u>른 사항을 수행한다.</u> <u>1. 인증신청 접수</u> <u>2. 인증시험 및 결과 통보</u> <u>3. 인증수수료 수납</u> <u>4. 인증결과 이의신청에 대한</u> <u>조치</u> <u>5. 인증결과 보고</u> <u>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</u> <u>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</u> <u>인증기관 지정요건, 인증기관</u> <u>심사방법, 필요 제출자료 등을</u> <u>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알리고</u> <u>신청을 받아야 한다.</u>

④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, 이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.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된 인증기관이 법 제33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인증기관 지정 요건 유지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

2. 인증업무 수행 결과보고

3.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하여준 제품에 대한 사후조사 협조

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의 처분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 취소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

려야 한다.

⑦ 법 제33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중에 소요되는 인건비, 경비, 기술료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, 인증기관은 산정기준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책정하여야 한다.

⑧ 영 제55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르고, 영 제55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46호 서식에 따른다.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인증기관의 지정, 관리, 취소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